

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86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1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시장제출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 :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1년 9월 8일 상정·검토보고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시민건강국장 박유미)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5조」, 「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」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센병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추진

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한센병 관리지원
 - 한센병 관리사업,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- 위탁기간 : 2022. 1. 1 ~ 2024. 12. 31. (3년)
- 사업비 : 592,983천원/년 (시비100%) ※ 2021년 기준
 - 한센병 관리사업 : 525,460천원
 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: 67,523천원
- 선정방법 : 공개 모집
 - 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) 준용

나. 주요위탁사무 내용

- 한센병 관리사업
 - 한센병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- 한센병 환자의 정기 검진과 치료
 -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,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
 - 한센 노령 장애인, 재가 한센인에 대한 신체, 심리 재활 사업
 - 한센환자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
 - 한센 정착농원 관리
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 - 한센인의 피해자 진상규명 등 권익보호 활동
 - 한센병 발생예방 및 정착농원 이권분쟁 등 분규조정 및 감독

- 한센병 환자들의 간헐적 불량행위 전면 차단활동
- 서울시 거주 고령, 장애 한센인의 이송·보호 조치
-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해소 등 교육 홍보사업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5조
-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현황

- 한센병 관리사업(이동진료, 연구, 사회복지사업)
 - 1차 : '90. 2. 9. ~ '95. 2. 8.(5년) 수의계약
 - 2차 : '95. 2. 9.~ '00. 2. 8. (5년) 재계약
 - 3차 : '00. 2. 9 ~ '04. 12. 31. (4년) 재계약
 - 4차 ~ 9차 : '05. 1. 1. ~ '21. 12. 31. (3년 단위, 재계약)
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(선도 및 계몽)
 - 1차 ~ 11차 : '89. 4. 1. ~ '21. 12. 31.(3년 단위, 재계약)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○ 한센병 관리사업의 목표

-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
-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관리, 장애예방,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

○ 한센사업의 목표 및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, 한센병 관련 전문성을

지닌 민간기관의 인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

- 이에 현재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('21.12.31.)도래에 따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적격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5조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 1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의 일부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

제2조(위탁사업)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(이동진료사업 포함)
2.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
3. 한센병의 조사·연구사업
4.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
5.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
6. 한센병 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
7.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
8. 한센병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 사업
9.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
10.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
11.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

제3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수립('21.6.)
-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('21.7.)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동의안 제출 개요

- 해당 사업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13호¹⁾ 및 「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3조²⁾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³⁾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본 위탁사무의 주요 위탁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사업명 : 한센병 관리지원
 - 한센병 관리사업,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- 위탁기간 : 2022. 1. 1 ~ 2024. 12. 31. (3년)
- 사업비 : 592,983천원/년 (시비100%) ※ 2021년 기준
 - 한센병 관리사업 : 525,460천원
 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: 67,523천원
- 선정방법 : 공개 모집

1)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2) 제3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3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역

가.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사업개요

- 한센병은 한센병균이 피부, 말초신경계,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병임.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현재 법정 감염병 제2급 감염병으로 구분되어 있음.⁴⁾
- 해당 사무는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병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 두 가지 사무로 구성되어 있음.
 - 한센병 관리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, 한센병력자의 등록보호를 통해 재발방지,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실시하는 사무이며,
 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은 한센인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위한 자조사업으로서 한센정책 수립과 보건복지 교류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는 사무임.

나. 서울시 한센인 현황

- 2021년 1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는 총 534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 이는 70세 이상 환자가 402명으로 평균연령이 75세에 달하는 등 대상자가 고령화되는 데에 따른 현상임.

4)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페이지 참조

(<http://m.amc.seoul.kr/asan/mobile/healthinfo/disease/diseaseDetail.do?contentId=31662&diseaseKindId=C000018>)

<표> 서울시 한센인 관리 현황

구 분	계(명)	균동태별(명)		성 별(명)		거주별(명)	
		양 성	음 성	남 자	여 자	재 가	정 착
총 수	534	8	526	311	223	471	63

<표> 서울시 관리 한센인 변화추이

(단위: 명)

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평균감소율
621	600	577	550	535	534	△2.85%

나. 민간위탁 추진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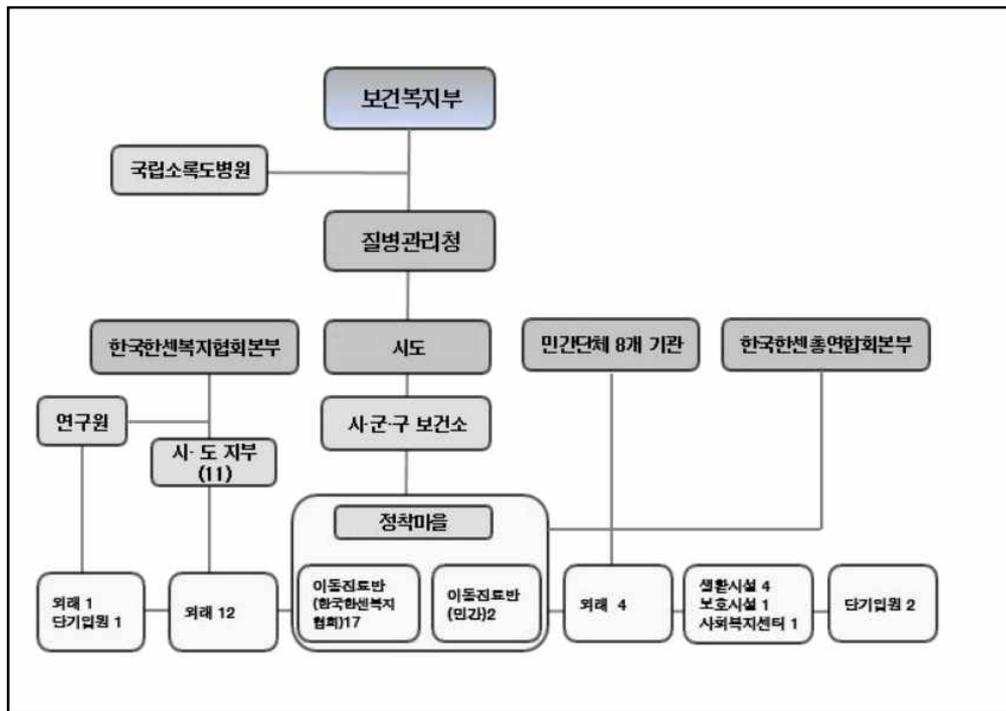
- 동 사무는 각각 1990년, 198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<표> 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현황

	한센병 관리사업	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
위탁기간	2022.1.1.~2024.12.31.(3년)	
최초위탁	1990.02.09	1989.04.01
위탁단체	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	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
인력	15명 (임원 6명, 직원 9명)	4명 (명예직 1명, 상근직 2명, 일용직 1명)
위탁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센병환자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지원 -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 사업 - 한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- 한센병의 조사연구 사업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센인피해사건 대상자 조사 - 진상규명 상담 - 법률지원 활동 - 재가한센인 방문지도 - 정착마을 지도관리 및 현안과약 등
위탁금액(2021년)	525,460천원	67,523천원

다. 민간위탁 사무 수행 내역 및 평가

- 동 사무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사무로 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음.



[그림] 한센병 관리 수행체계5)

- 2021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「2021년도 한센병 관리지침」에 규정된 시·도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음.

5) 질병관리청(2021). 2021년도 한센병 관리지침

※ 기관별 주요업무

- ① 시·도 한센사업의 계획수립
- ② 한국한센복지협회·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지도·감독
- ③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지도·감독
- ④ 한센사업대상자 관련 사회복지 시설 등의 보건증진을 위한 지도·감독
- ⑤ 정착마을의 보건증진을 위한 지도·감독 등

- 이번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는 국가 한센병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시·도의 주요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 하겠음.
- 해당 민간위탁 사무 중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, 해당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함.
- 이에 따라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의 점수는 80.41점으로 나타나고 있음. 이에 따르면 민간위탁금 예산집행율이 100%에 가깝게 나오고, 위탁 사무 관련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그러나 사업지표에 있어서 외부환경 분석 및 사회변화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,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, 결과보고서 작성, 결과보고를 위한 성과 관리 및 점검, 증빙관리 및 모니터링, 체계적인 행정사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된 바 있음. 추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

해 지도·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.

3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⁶⁾에 따르면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.
- 동 사무는 각각 1989년,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민간위탁 단체를 통해 진행되어온 사무로,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4 종합의견

- 한센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편견·차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.
 - 특히 국가의 강제격리정책으로 인하여 한센인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낙인과 차별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음. 한센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'한센특별법'을

6)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정하여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.⁷⁾

-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, 지속성을 고려해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,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개선 방향 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
7) 국가인권위원회(2019).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5조」, 「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」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센병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한센병 관리지원
 - 한센병 관리사업,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- 위탁기간 : 2022. 1. 1 ~ 2024. 12. 31. (3년)
- 사업비 : 592,983천원/년 (시비100%) ※ 2021년 기준
 - 한센병 관리사업 : 525,460천원
 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: 67,523천원
- 선정방법 : 공개 모집

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) 준용

나. 주요위탁사무 내용

○ 한센병 관리사업

- 한센병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한센병 환자의 정기 검진과 치료
-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,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
- 한센 노령 장애인, 재가 한센인에 대한 신체, 심리 재활 사업
- 한센환자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
- 한센 정착농원 관리

○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
- 한센인의 피해자 진상규명 등 권익보호 활동
- 한센병 발생예방 및 정착농원 이권분쟁 등 분규조정 및 감독
- 한센병 환자들의 간헐적 불량행위 전면 차단활동
- 서울시 거주 고령, 장애 한센인의 이송·보호 조치
-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해소 등 교육 홍보사업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5조
-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현황

- 한센병 관리사업(이동진료, 연구, 사회복귀사업)
 - 1차 : '90. 2. 9. ~ '95. 2. 8.(5년) 수의계약
 - 2차 : '95. 2. 9.~ '00. 2. 8. (5년) 재계약
 - 3차 : '00. 2. 9 ~ '04. 12. 31. (4년) 재계약
 - 4차 ~ 9차 : '05. 1. 1. ~ '21. 12. 31. (3년 단위, 재계약)
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(선도 및 계몽)
 - 1차 ~ 11차 : '89. 4. 1. ~ '21. 12. 31.(3년 단위, 재계약)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한센병 관리사업의 목표
 -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
 -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관리, 장애예방,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
- 한센사업의 목표 및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, 한센병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의 인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
- 이에 현재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('21.12.31.)도래에 따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적격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5조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 1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의 일부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

제2조(위탁사업)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시장)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(이동진료사업 포함)
2.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
3. 한센병의 조사·연구사업
4.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
5.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
6. 한센병 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
7.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
8. 한센병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 사업
9.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
10.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
11.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

제3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수립('21.6.)
-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('21.7.)

※ 작성자 :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김수진 (☎2133-7663)